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56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이종배·강선영·김상훈

김성원 · 엄태영 · 박대출

조승환 · 성일종 · 박덕흠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 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 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년"을 "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	
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	
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u>20년</u> 의 유기징역으로 한	<u>30년</u>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